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대상 부품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업무 위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안 제11조)

- 1) 타워크레인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확인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함
- 2) 이를 통해 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안전성이 확인된 타워크레인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안 제12조의4)

- 1)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웨이트 및 기초 앵커를 부품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
- 2)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에 불량 부품의 사용을 차단하고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계 제작결합조사 업무 위탁기관 규정(안 제12조의2)

- 1) 건설기계 제작결합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2013년
부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로 한다.

제11조제2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을 “확인하기 위한”으로, “사항을 조사하
게 할 수 있다”를 “사항에 대한 조사를 제18조의3제1항제1호 소정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로 한다.
제12조의4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4. 타워크레인의 지브

5. 타워크레인의 웨이트

6. 타워크레인의 설치기초 앵커

제18조의3제1항제2호 중 “단서”를 “본문”으로, “형식에 관하여 신고한”
을 “형식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검사대행
자.”를 “검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형식신고”를 “형식승인”으로, “형식

변경신고”를 “형식변경승인”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를 “검사대행자”로,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를 “검사대행자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한정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형식신고대상 및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12조의4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형식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같은 형식의 타워크레인을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형식신고 후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

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신고한 자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 · 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 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 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 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법 제14 조</u> ----- ----- -----.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 21. (생략) <u>22. 타워크레인</u>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 ----- ----- ----- -----.
제12조의2(제작결합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	1. ~ 21.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2조의2(제작결합의 조사) --- ----- -----

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2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① 법 제 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생략)

확인하기 위한

----- 사 항에 대
한 조사를 제18조의3제1항제1
호 소정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에 위탁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1. 2. (현행과 같음)

3.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4. 타워크레인의 지브

5. 타워크레인의 웨이트

6. 타워크레인의 설치기초 앵커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① ----

1. (현행과 같음)

2. 타워크레인의 제작·조립을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신고한 자(이하 "타워크레인 제작자"라 한다)	2. ----- ----- ----- 본문 ----- ----- 형식승인을 받은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②----- ----- ----- -----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에게 위	1. ----- ----- ----- ----- 검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 --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검사대행자-- ----- -----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

탁한다. 1의2.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업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에 한정한다) 2.·3. (생략) ③ (생략)	1의2. ----- ----- ----- ----- ----- 한 한다-----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765